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1도16473 가. 업무방해

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 률위반

다.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라. 증거인멸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다. C

4.가.다. D

5.가.다. E

6.가.다. F

7.라. G

8.다. 주식회사 H

상 고 인 피고인 A, B, D, E, F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남, 김유범, 박창현, 우가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정준화(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이상훈, 최형표,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장일혁, 이화용, 박경용, 우지훈, 최장우, 이유경, 윤희상(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오상진, 이슬아(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권태형(피고인 E, F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이다우, 권성국, 강준모(피고인 G를 위하여)

변호사 홍준호(피고인 주식회사 H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22. 선고 2020노26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 9, 10, 18 내지 21 및 제1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8 내지 16 기재 각 지원자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면접위원들 및 H에 대한 업무방해부분, 제1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8, 11, 12, 14 기재 각 지원자의



서류전형 부정합격으로 인한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제1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11 내지 13, 15 내지 17 기재 각 지원자의 1차 면접전형 부정합격 으로 인한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제1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14 기재 각 지원자의 2차 면접전형 부정합격으로 인한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 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②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1 범죄 일람표 순번 23, 24 및 제1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1, 23 내지 31 기 재 각 지원자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면접위원들 및 H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 반 부분, ③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④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9, 10, 18 내지 21, 23, 24 및 제1심 판시 별지2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8 내지 21, 23 내지 31 기재 각 지원자의 부정합격으로 인 한 면접위원들 및 H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제1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8, 11, 12, 14 기재 각 지원자의 서류전형 부정합격으로 인한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 무방해 부분, 제1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15 내지 17 기재 각 지 원자의 1차 면접전형 부정합격으로 인한 1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제1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지원자의 2차 면접전형 부정합격으로 인한 2차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⑤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1 기재 각 지원자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면접위원들 및 H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⑥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및 제1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31 기재 각 지원자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면접위원들 및 H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⑦ 피고인 G,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관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좌의 성립, 증거인멸죄의 고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통상문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B, D, E,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D, E, F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관계, 공소사실의 특정,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6-30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번과	처대역